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2020회계연도 결산

1. 금천구 결산 총괄

1) 2020회계연도 결산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)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(A)	세출(B)	결산상 잉여금(C=A-B)
합 계	807,130,081,820	833,581,607,857	686,486,998,834	147,094,609,023
일반회계	789,989,933,280	816,702,159,230	675,105,780,094	141,596,379,136
특별회계	17,140,148,540	16,879,448,627	11,381,218,740	5,498,229,887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다음연도 이월액			보조금실제반납금		현년도 채무상환	순세계잉여금
	명시	사고	계속비	보조금반납금	교부차액		
합 계	50,450,971,660 (400,000,000)	14,887,460,370	0	14,190,206,835	571,986,804	0	66,993,983,354
일반회계	50,450,971,660 (400,000,000)	14,058,212,050	0	13,861,751,775	588,786,804	0	62,636,656,847
특별회계	0	829,248,320	0	328,455,060	△16,800,000	0	4,357,326,507

※ ()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/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

- 총 세입 결산액은 8,335억 8,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9.61%(1,904억 1,613만원) 증가하였으며,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7.97%임.
- 총 세출 결산액은 6,864억 8,699만원으로 전년대비 36.53%(1,836억 6,082만원) 증가하였으며, 최근 5년간 세출 평균 증가율은 16.99%임.

※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16	2017	2018	2019	2020
총 계	세 입	417,112,037	480,128,370	552,918,442	650,687,180	866,183,017
	세 출	353,749,596	386,198,400	426,595,613	509,023,474	698,297,653
	결산상잉여금	63,362,441	93,929,970	126,322,828	141,663,706	167,885,364

2)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계	기편성예산	추경재원조정액	비 고
합 계	66,993,983,354	32,338,584,000	34,655,399,354	
일반회계	62,636,656,847	25,010,703,000	37,625,953,847	
특별회계	4,357,326,507	7,327,881,000	△2,970,554,493	

- 순세계 잉여금은 669억 9,398만원으로 전년대비 15.71%(△124억 8,746만원) 감소하였으며,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4.25%임.

3) 예비비 지출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예산액	지출결정액(A)	지출액(B)	이월액(C)	지출잔액(D=A-B-C)
합 계	4,859,747,000	2,713,428,000	2,546,346,296	0	167,081,704
일반회계	4,759,747,000	2,713,428,000	2,546,346,296	0	167,081,704
특별회계	100,000,000	0	0	0	

-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5,974만원으로서 전년도 256억 1,541만원보다 207억 5,567만원 감소하였으며, 『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』 외 17건으로 25억 4,634만원을 지출함.

4) 기금결산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합 계	13,696	20,791	32,601	11,811	34,487
자활기금	963	△28	102	130	935
노인복지기금	349	4	7	2	353
양성평등기금	397	5	10	5	402
청년미래기금	500	503	503	0	1,003
재정안정화기금	0	17,101	17,101	0	17,101
재난관리기금	3,676	1,806	7,067	5,261	5,482
옥외광고발전기금	1,053	190	303	113	1,242
도로굴착복구기금	1,633	41	1,120	1,079	1,674
중소기업육성기금	3,462	1,053	6,095	5,042	4,515
남북교류협력기금	0	59	90	31	59
환경미화원차량차입금대여기금	476	28	56	28	504
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	255	18	28	10	273
식품진흥기금	931	12	120	108	943

-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3종으로
전년도말 136억 9,627만원에서
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140만원이며
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1,065만원이고
차입잔액은 344억 8,702만원임.

2.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

1) 복지가족국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(일반회계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246,309,707,000	247,355,744,820	247,130,695,480	99.91%
복지정책과	24,627,724,000	24,725,046,060	24,724,680,250	99.99%
복지지원과	50,418,275,000	50,684,846,510	50,525,511,860	99.69%
어르신 장애인과	94,151,451,000	94,300,454,650	94,235,105,770	99.93%
여성가족과	58,223,204,000	58,616,688,330	58,616,688,330	100.00%
아동청년과	18,889,053,000	19,028,709,270	19,028,709,270	100.00%

2) 복지가족국 세출 총괄

(일반회계)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319,596,114,340	295,518,153,743	12,060,424,100	4,730,833,027	92.47%
복지정책과	27,673,005,000	24,355,016,970		678,262,727	88.01%
복지지원과	58,780,937,000	57,481,043,390		547,345,190	97.79%
어르신 장애인과	120,960,903,340	118,621,371,069	418,201,000	965,180,211	98.07%
여성가족과	83,874,411,000	73,015,525,015	6,576,622,900	2,063,044,255	87.05%
아동청년과	28,306,858,000	22,045,197,299	5,065,600,200	477,000,644	77.88%

○ 2020 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세입 결산액은 2,471억 3,069만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30.2%이며 지방교부세, 국·시비보조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.

○ 복지가족국 소관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,955억 1,815만 3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지출의 약 43.7%임.

3) 집행잔액(불용액)

○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

(일반회계)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불용율 (%)	사유별			
				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	낙찰차액	예산집행액	보조금집행잔액
계	319,596,114,340	4,730,833,027	1.48%	109,295,030	4,975,830	1,209,418,007	3,407,144,160
복지정책과	27,673,005,000	678,262,727	2.45%	1,500,000	90,000	153,349,860	523,322,867
복지지원과	58,780,937,000	547,345,190	0.93%	500,000		35,338,040	511,507,150
어르신 장애인과	120,960,903,340	965,180,211	0.80%	69,795,030		291,180,571	604,204,610
여성가족과	83,874,411,000	2,063,044,255	2.46%	30,000,000	1,000,000	614,076,395	1,417,967,860
아동청년과	28,306,858,000	477,000,644	1.69%	7,500,000	3,885,830	115,473,141	350,141,673

○ 복지가족국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액(가)	지출액(나)	이월액(다)	보조금 반납금(라)	집행잔액 (가-나+다+라)	집행률 (나/가)
복지정책과	계	3,400,351,000	1,612,243,300		1,326,114,470	461,993,230	47.41%
	재해구호 관리	3,000,000	990,000			2,010,000	33.00%
	긴급복지	2,532,766,000	1,023,493,400		1,100,815,950	408,456,650	40.41%
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	860,085,000	584,667,400		225,298,520	50,119,080	67.98%
	독립유공자(순국 선열, 애국지사) 유족 위문	4,500,000	3,092,500			1,407,500	68.72%
복지지원과	계	902,281,000	307,278,000			595,003,000	34.06%
	무연고 사망자 관리	12,400,000	6,541,000			5,859,000	52.75%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	889,881,000	300,737,000			589,144,000	33.80%
어르신 장애인과	계	473,312,000	101,265,840		104,691,110	267,355,050	21.40%
	삼식이탈출 (주민참여)	12,000,000	2,772,110			9,227,890	23.10%
	경로당 신설	267,000,000	61,962,000			205,038,000	23.21%
	경로당 특별 냉·난방비 등 지원	104,840,000	18,213,870		55,441,110	31,185,020	17.37%
	노인교실지원	28,740,000	6,835,860			21,904,140	23.79%
	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	50,732,000	11,482,000		39,250,000		22.63%
	시각언어로말해요, 역지사지금천 (지역사회혁신계획)	10,000,000			10,000,000		0.00%
여성가족과	계	6,458,705,000	660,243,190	5,504,378,900	176,586,790	117,496,120	10.22%
	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	95,312,000	56,306,450		19,502,770	19,502,780	59.08%
	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	256,495,000	143,632,740		84,305,450	28,556,810	56.00%
	대체교사 인건비 지원	164,340,000	89,995,000		58,732,950	15,612,050	54.76%
	보수교육비	18,334,000	9,260,000		7,168,600	1,905,400	50.51%
	부모모니터링단 운영	11,224,000	2,008,700		6,876,220	2,339,080	17.90%
	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신축	1,980,000,000	330,223,900	1,649,776,100			16.68%
	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	500,000,000	17,421,200	482,578,800			3.48%
	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	3,060,000,000	5,975,200	3,054,024,000	800		0.20%
	지혜어린이집	188,000,000		188,000,000			0.00%

	국공립전환						
	독산롯데캐슬 국공립전환	130,000,000		130,000,000			0.00%
	다문화 축제	15,000,000				15,000,000	0.00%
	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봉사단(주민참여)	15,000,000				15,000,000	0.00%
	소외된 소수의 외국인 우리도 있답니다 (주민참여)	25,000,000	5,420,000			19,580,000	21.68%
아동청년과	계	5,451,436,000	357,822,210	4,914,676,000	124,708,250	54,229,540	6.56%
	금천구 아동·청소년 의회 운영	54,550,000	20,561,070		792,000	33,196,930	37.69%
	청소년 문화의집 건립	4,049,000,000	7,871,200	4,040,326,000		802,800	0.19%
	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	13,660,000	8,842,880		4,817,120		64.74%
	아동수당 사업홍보 및 운영	2,576,000	113,170		2,093,810	369,020	4.39%
	아동복지시설 등 지원	4,880,000	1,880,000			3,000,000	38.52%
	입양가족 지원	6,000,000	1,000,000			5,000,000	16.67%
	청년자립기반 구축	11,580,000	5,542,910			6,037,090	47.87%
	청년활동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	999,500,000	124,326,300	874,350,000		823,700	12.44%
	청년 네트워크 활성화(청년자율 예산제)	132,980,000	73,878,440		59,101,560		55.56%
	금천청년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(청년자율예산제)	166,710,000	108,806,240		57,903,760		65.27%
	해피스마일 재능기부단 (구 주민참여)	10,000,000	5,000,000			5,000,000	50.00%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-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7억 3,083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.48%를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됨.
-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 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,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3. 예산의 전용 및 이체

○ 예산전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부서별	건수	금 액	사유
계		2	7,042	
전용	어 르 신 장애인과	2	7,042	-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비영리IT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구매(1,713천원) -센터보안을 위한 방화벽 시스템 구매(5,329천원)

-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복지가족국의 예산 전용은 총 2건 704만 2천원을 전용하였음.

4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26	12,060,424	19	9,106,934	7	2,953,490
복지정책과	-	-	-	-	-	-
복지지원과	-	-	-	-	-	-
어르신장애인과	3	418,201	3	418,201	-	-
여성가족과	15	6,576,623	11	3,888,007	4	2,688,616
아동청소년과	8	5,065,600	5	4,800,726	3	264,874

○ 명시이월 사업 현황 : 19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	통계목	예 산 현 액	원인행위 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 월 사 유
어르신 장애인과	독산1동 분소 보건지소·데이케어센터 설치(병설형)	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	300,000		300,000	[연도 내 지출 불가] '20. 10.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,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중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(LH공사와 협의 중, 협의 후 실시설계 및 공사진행)
	코로나19 대응 복지 시설 방역키트 지원	사무관리비	12,000		12,000	[연도 내 지출 불가] '20. 12.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집행 불가
	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	시설비	4,862,001	4,772,300	106,201	[연도내 지출 불가]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본인증 심사시에 따른 향후 관련 보완이 예상되어 예산 이월코자 함
여 성 가족과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어린이집 방역 지원	사무관리비	113,704	99,304	14,400	[연도 내 집행 불가] '20. 12. 특별교부금 교부로 '21년 사업 추진
	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	시설비	488,000	43,553	444,447	[연도 내 지출 불가] 공간 구성 변경, 공사 범위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 기한 연장('21.1.)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
		감리비	7,000		7,000	
		자산및물품취득비	5,000		5,000	
	구립별하 어린이집 신축	사무관리비	17,616	5,975	11,640	[연도 내 지출 불가] 대체부지 소유주 여건으로 건물 매입시기 조정되어 연도 내 지출 불가
시설비		3,042,384		3,042,384		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지출 원인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여성 가족과	지혜어린이집 국공립전환	민간위탁 사업비	60,000		60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'20.12월 서울시 국공립확충 심의 승인으로 '21년 사업 추진
		기타자본이전	128,000		128,000	
	독산롯데캐슬 국공립전환	민간위탁 사업비	130,000		130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'20.12월 서울시 국공립확충 심의 승인으로 '21년 사업 추진
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사무관리비	31,500	15,750	15,750	[연도 내 지출 불가] 건립부지 부동산 잔금일('21.6.15.)에 중개수수료 완납금(50%) 등 지급
시설비		4,510,950	4,241,284	29,386		
아동 청년과	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	사무관리비	36,000		36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'20.7월 소유주별 협의매수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, '20.12월 대체부지 소유주와 토지매매 협상 증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
		시설비	4,012,000	7,673	4,004,326	
	청년활동전용 공간 「금천청 년꿈터」 조성	시설비	475,351	235,000	240,351	[연도 내 지출 불가] 설계용역이 '21. 5월까지로 공사비(감리, 철거, 기초 공사비 등) 연도 내 지출 불가
		감리비	500,000		500,000	
		시설부대비	22,649	2,600	20,049	

○ 사고이월 사업 현황 : 7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 현액	원인 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여성 가족과	구립금주 어린이집 대체신축	시설비	1,770,000	1,770,000	1,622,251	‘20.12월 공사(건축·조경·토목·기계) 및 기타(소방·전기·통신)공사 발주
		감리비	30,000	30,000	27,525	‘21.12월 신축공사 착공, ‘21.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에 따른 감리용역 시행
	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	시설비	488,000	43,553	26,132	공사비 증가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기간 연장
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시설비	4,510,950	4,241,284	1,012,708	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부지 부동산 잔금 및 타당성조사 완납금
아동 청년과	아동청소년 행사 지원	행사 운영비	12,000	9,704	9,704	코로나19로 인하여 연도 내 행사진행 어려움
	아동양육 한시지원	사회 보장적 수혜금	3,586,000	3,586,000	141,220	카드사와의 계약변경 및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정산 불가능
	청년활동 전용공간 「금천청 년꿈터」 조성	시설비	475,351	235,000	113,950	2020년 9월 용역계약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

○ 2020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중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,

- 명시이월은 총 19건 91억 693만 4천원이며
- 사고이월은 총 7건 29억 5,349만원이 이월되었음.

Ⅲ.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1. 세입결산 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,497,441,000	2,499,271,724	1,578,816,884	63.17%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607,560,000	1,068,396,240	666,591,400	62.39%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	889,881,000	1,430,875,484	912,225,484	63.75%

-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대비 6억 756만원에서 10억 6,8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, 62.4%인 6억 6,659만원을 징수하였으며,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 3,0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, 63.7%인 9억 1,222만원을 징수함.

2. 세출결산 현황

(단위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(B/A)
계	1,497,441,000	890,785,830		589,144,090	59.49%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607,560,000	590,048,830		90	97.12%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	889,881,000	300,737,000		589,144,000	33.80%

- 의료급여기금은 집행률 97.1%로 5억 9,0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은 33.7%이며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

○ 기금결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2,209,238	484,266	621,726	137,460	2,693,504
자활기금	963,346	△27,903	102,097	130,000	935,443
노인복지기금	349,154	4,239	6,699	2,460	353,393
양성평등기금	396,738	5,327	10,327	5,000	402,065
청년미래기금	500,000	502,603	502,603	0	1,002,603

○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

- 전년도말 조성액은 22억 923만원이며
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억 9,350만원이고
-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,746만원임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4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[전문개정 2011. 8. 4.]

「지방회계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조(결산의 수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